



강의평가 내규

제정일	2013. 8. 1
개정일	2024. 3.15
개정차수	8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교원의 강의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평가시기 및 기간) 강의평가는 매 학기 시행하며, 평가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조 (평가대상) 강의평가 대상 교과목은 당해 학기 개설된 전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목은 제외한다.

제 4조 (평가방법) 강의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의 개편에 맞추어 강의충실성 및 효율성, 수업만족도 등을 포함한 강의평가 항목을 총장이 따로 정하며, 수정내용이 없을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10)

제 5조 (평가의 공정성) ① 해당 과목 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 라 한다)는 학생의 강의평가를 열람 및 감독할 수 없으며, 강의평가 실시에 대한 홍보 이외의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담당교수는 강의평가 결과를 학생에 대한 성적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③ 강의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성실히 설문에 응해야 한다.

제 6조 (평가결과의 확인) ① 담당교수는 강의평가 기간 종료 후, 평가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매 학기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7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담당교수는 강의평가 결과를 매 학기 확인하여 자신의 강의를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15)

③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 중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전임교원인 경우 다음 학기 강의개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회 이상 강의 역량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법 또는 관련 연수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회 연속 하위 10% 중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전임교원에게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관련 과정을 이수하며, 교육혁신지원센터를 통하여 티칭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5. 2. 1, 2019. 7. 1, 2020. 8.10, 2021. 1. 1)

④ (삭제 2019. 8. 1)

⑤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 중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비전임교원인 경우 대상자는 소명서, 학부(과)장은 강의개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평균점수 65점 미만인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한다. 또한 2회 연속 하위 10% 중 평균점수 70점(2개 학기 평균점수 평균) 미만인 비전임교원인 경우 대상자에게 경고장 발부 및 소명서, 학부(과)장은 강의개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평균점수 65점 미만인자에게는 다음 학기 교과분담을 미배정한다. (신설 2021. 1. 1)

제 8조 (포상) 강의평가 결과 우수교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 9조 (개정) 규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원(교원 및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된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